

##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

### 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424호
- 나. 발 의 자 : 박성연 의원외 23명
- 다. 발의일자 : 2023년 2월 6일
- 라. 회부일자 : 2023년 2월 9일

### 2. 제안이유

-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저소득층,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두텁게 보장하고, 문화 예술적 소질 및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 마련과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규정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저소득층,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·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과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함(안 제5조제3항).

#### 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주우철)

- 개정안은 시장이 저소득층,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시책 강구 방안 마련과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음.
- 관련 법령인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<sup>1)</sup>과 「문화예술진흥법」<sup>2)</sup>은 저소득층,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 기회와 활동 장려·지원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어 입법 타당성이 인정됨.
- 대한민국 국회는 2022년 9월 27일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15조의2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이 포함된 근거를 마련하여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음. 따라서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전적 입법 조치로 보이며,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지원 방안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취지로 이해됨.

---

##### 1)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

제5조의2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,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##### 2) 「문화예술진흥법」

제15조의2(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·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,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의안번호  
424

##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	제 안 자		제안일자	소관 상임위	
		박성연 의원 외 23인		2022.1.10.	문화체육관광위원회
주요내용	<p><b>&lt;개정 필요성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 개정에 따라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문화예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 마련등에 대한 규정 필요</li> </ul> <p><b>&lt;주요 입법 요지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저소득층,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·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</li> </ul>				
추진경과	○ '23.1. 개정안 발의				
부 서 검토의견	원안가결(○) / 수정가결 ( ) / 부결( ) / 보류( )				
쟁점사항 (의회동향, 문제점 등)	○ 해당없음				
대응방안	○ 해당없음				
상 임 위 처리결과					
향후계획					
담당부서	문화예술과	팀장	임종배(☎2133-2564)	담당	김상철(☎2133-2566)